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국가보훈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의 진료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심사·조정 및 평가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는데,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위탁병원 감면대상자의 진료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진료비용 심사업무 위탁에 한계가 있었음
이에,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위탁병원 감면대상자의 진료비용을 포함하고자 함(안 제17조의2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24조의3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

대통령령 제 호
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“제17조제2항·제3항 또는 제5항”을 “제17조제2항·제3항 또는 제5항·제6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제42조제1항·제2항 또는 제5항”을 “제42조제1항·제2항, 제5항 또는 제7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제51조제1항·제2항 또는 제5항”을 “제51조제1항·제2항 또는 제5항·제6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제7조제1항”을 “제7조제1항 또는 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의2(업무의 위탁 등) ① (생략)	제17조의2(업무의 위탁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“진료대상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진료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·제3항 또는 제5항	1. ----- -- 제17조제2항·제3항 또는 제5항·제6항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제1항·제2항 또는 제5항(같은 법 제73조 및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	2. ----- ----- 제42조제1항·제2항, 제5항 또는 제7항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3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1항·제2항 또는 제5항	3. ----- ----- 제51조제1항·제2항 또는 제5항·제6항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5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	5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

<u>항</u>	<u>항 또는 제2항</u>
6. ~ 8. (생 략)	6. ~ 8. (현행과 같음)
③ ·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641